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81 발의연월일: 2022. 4. 11.

발 의 자:이정문・김병기・김철민

문진석 • 민형배 • 박상혁

박완주 • 서영석 • 신동근

이광재 • 이성만 • 이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분쟁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4항 중 "제1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당사자는 제24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u>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u>	<u><단서 삭제></u>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				
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 등) ① ~ ③ (생	제26조(조정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	4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u><후단</u>	<u>이 경우</u>			
<u>신설></u>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			
	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			
	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			
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한 경우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 ⑤ ~ ⑦ (생 략)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u>분쟁조정</u> 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 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 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u>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 9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력) ① ~ ③ (생 략)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1항</u>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생략)

조정	신청을	한 경	우. 다	<u> 구만,</u>	공
<u>정거</u>	래위원호	로부	터스]정조	ː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	조
정을	신청한	경우	에는	그러	하
지이	나니하다.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